

**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
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(제6조 관련)**

대상시설		비치용품	
		의무용품	권장용품
제1종근린생활시설	읍·면·동사무소	점자업무안내책자, 8배율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, 보청기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	편의시설안내지도
	우체국, 전신전화국	8배율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	점자업무안내책자
	공공도서관	보청기기	저시력용 독서기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
문화 및 집회시설	공연장, 관람장	보청기기	점자공연안내책자
	전시장, 동·식물원		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
판매시설	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·소매점		음성계산기
	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(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)	장애인용 쇼핑카트	전동보장구충전시설
교육연구시설	도서관	저시력용 독서기,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	점자프린터, 컴퓨터(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) 및 전동보장구충전시설
노유자시설	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		전동보장구충전시설
업무시설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	점자업무안내책자	점자업무안내책자,

	의 청사(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)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	(시·군·구청에 한한다), 휠체어, 8배율 이상의 확대경,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	편의시설안내지도, 컴퓨터(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) 및 전동보장구충전 시설
숙박시설	관광숙박시설		점자관광안내책자
장례식장		입식 식탁 및 휴대용 경사로	
운동시설	수영장	입수용 휠체어	

비고

1.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, 민원실, 안내실,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,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.
2. "보청기기"는 보청기,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.
3. 장애인용 쇼핑카트는 최소 3개 이상을 쇼핑카트 보관장소 등에 비치하고, 장애인용 쇼핑카트가 비치되어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.
4. 장례식장(병원, 화장시설 내 장례식장을 포함한다) 빈소의 바닥면에 높이 차이가 있고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휴대용 경사로를 비치해야 한다.